

중국의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에 관한 연구*

박 종 철 (경상국립대)
(nimbin21@daum.net)



국문요약

글로벌 차원에서 해외이주노동자는 다양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해외파견노동자는 더욱 복잡한 입장에 놓여있다. 북한 주민의 해외노동에 관한 유출 유출과 유입요인은 다른 국가의 사례와 유사하다. 따라서 특히 주목할 요인은 제재의 비의도적인 효과로서 제재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5.24조치에 의하여, 풍선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2010년대 최대 15만명이 노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 10만명 이상이 노동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북중 사이에 노동자의 잔류와 귀국, 그리고 교대인원 파견을 둘러싼 문제가 현안 쟁점이 되고 있다. 중국당국의 입장에서 북중관계의 특수성에 기반한 대외전략과 더불어 중국식 인도주의의 절충적 해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해외체류와 가족간의 격리로 인하여 또다른 차원의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이들의 임금총액을 단순합산하면, 북한 총수출액의 약 2배로 추정된다.

주제어: 5·24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 코로나 팬데믹, 해외송금, 포괄적 제재

* 이 연구는 2021년도 경상국립대학교 연구년제 연구교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I. 머리말

해외이주 노동자 이동은 역사적으로 전지구 차원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국가 체제의 개방 여부와 무관하게 합법·비합법적 방식으로 노동을 위한 이동이 증가해 왔다. 또한 지구촌의 빈부격차와 불균등에 따라, 빈곤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의 국경을 넘어선 노동자의 이주현상을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더 나은 삶을 향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원천이 되고 있다.

해외이주노동자의 개념과 범주가 다양하고, 다소 모호한 경계범위에 해당하는 회색지대 영역도 적지 않다. 따라서 글로벌 차원의 쟁점이든 각국 내부의 지역별 조사이든, 연구와 통계 작성이 어려운 영역으로 추정치에 기대어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비합법 혹은 비자목적을 넘어선 노동자가 많은 특성상, 연구와 조사에는 개념과 범위가 조사기관이나 연구자마다 다르게 범주화하는 한계가 있다. 북한 해외파견노동자 역시 자료가 제한적이고 인터뷰조사 역시 제한적이어서, 관련 개념, 규모와 방식과 같은 메커니즘의 해명되지 않고 있다. 서방의 시각은 주로 인권과 제재의 맥락, 혹은 핵무기 개발의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해외파견노동자를 금지 혹은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논리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어서, 이에 대한 실체를 추정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규모와 범위를 추정한 연구로는 최영운(2017, 101), 이상신 외(2017, 4와 13) 등이 있는데, 이는 당시 통계입수가 어느정도 가능했던 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추정하고 있다. 각각의 연구에서 범위와 규모의 추정에 어느정도 편차가 존재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고 자료가 비공개 상태이며 또한 조사대상에 대한 개념과 범주가 연구자마다 상이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연구 경향이 있다. 첫째, 주로 강제노동의 맥락에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를 둘러싸고 파견국과 수용국을 비판하는 분석이 있고¹⁾, 북한당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원천자금이 되고 있다며 주로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을 지적하는 정책보고서가 있다.(안제노, 이상근, 2023) 특히 라이덴대학의 연구팀은 2016년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세계적으로 담론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워싱턴에 소재한 북한인권위원회(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의 스카라토이우

1) 네델란드 라이덴대학 한국학과의 렉코 브뢰커, 임꺼 판 할딩엔(2016)는 폴란드내의 북한노동자의 강제노동문제를 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으키며, 유럽연합내의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에도 교육시켜야 하고, ILO에도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 Greg Scarlatoiu, Raymond Ha, Hyunseung Lee(2022);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2017); 이우태 외(2023).

(Greg Scarlatoiu 등. 2022)는 ‘중국, 러시아에 공식(officially) 파견된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에서 북한당국과 다양한 부패로 인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ILO위반과 유엔 결의안 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의 서방 언론 보도량도 상당하다.

둘째, 북·중 경제협력 속에서 북한노동자의 활용방안이나(이종운 2017, 95-125), 젠더 관점에서 해외파견 식당종업원에 대한 삶에 대한 인터뷰 조사(이지연 2023)가 연구가 있다. 셋째, 이주노동의 맥락에서 강제노동과 제재라는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며, 오히려 이러한 시각은 해외파견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역설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윤애림 2020, 191; 문희영 2023). 대표적인 실증연구로는 이애리아의 현장조사가 있는데,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에서 실태를 면밀하게 정리하였다(이애리아, 이창호 2015).²⁾ 그러나 김정은 시기 해외파견노동자가 최대로 파견된 중국의 경우 실증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코로나 팬데믹이후 북중 국경이 개방된 상황에서도 중국내 상당수의 북한주민들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의 중국으로의 유입과정과 규모, 그리고 잔류인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제재를 결의하고도 북한주민의 노동을 묵인하는 중국의 시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문을 구성하도록 한다. 첫째, 글로벌 차원의 이주노동자의 역사적이며 구조적 차별을 검토하고, 둘째, 중국내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에 대한 개념과 특성, 그리고 규모와 현황을 추정하고, 셋째, 노동자 해외파견에 미치는 외부요인과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입장 변화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5.24조치와 같은 단독제재나 유엔 안보리 포괄적 제재, 그리고 코로나팬데믹이라는 외부요인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중국정부의 잔류 노동자에 대한 절충적 시각을 이해하도록 한다.³⁾ 연구방법으로 현지조사와 현지 전문가와 관계자, 중국기업인과 북한노동자 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
- 2) 와세다대학의 이애리아 박사는 러시아 각지의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에 대하여 현지에서 관찰하면서 해외파견 과정과 수용지역에서 문제점을 인권의 맥락에서 분석하며, 수용국내의 강도 높은 노동에 문제는 있지만, 북한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 노동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자발적이라는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3) 북한 주민의 삶의 욕구와 당국의 수입증대, 그리고 중국 국경지방의 노동력 부족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다시 설명하면 김정은 시기 구조적으로 유출요인과 유입요인, 매개요인에 변화가 크지 않았다.

II. 해외파견노동자의 개념과 규모

1. 이주노동의 발생요인과 차별의 문제

인류는 태초부터 더 나은 삶의 터전과 기회를 찾아서 떠돌았다. 의식주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기본욕구는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었고, 떠도는 인간(Nomad)은 인류 진보의 근원이 되었다. 따라서 인간의 이동과 이주는 기본적인 생존권에 해당한다. 개인적 차원의 이동에서부터 수천만명의 유럽인이 아메리카로 이주와 같은 집단 대량이주까지 범주도 다양하며, 원인도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혹은 복합적이다.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국내외의 다양한 이유로 평소 거주지를 떠난 사람을 이민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세계인구에서 해외이민 비율이 2000년 2.8%에서 2019년 3.5%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에도 약 천만명이 월경하면서 비합법 이민자가, 북아프리카-아랍의 재스민 혁명으로 유럽연합에도 수백만명이 넘는 비합법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럽연합 대다수 국가는 미국과 유사하게 장벽을 치고 이민자를 거부하며 스스로의 국가이념이나 인권 규범을 위반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고⁴⁾, 반대로 이민자를 무제한 받아들이는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정권의 경우 유럽연합으로부터 막대한 보조금과 이중국적을 부여하는 투표동원 및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용하지만, 실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유럽의 난민위기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유럽연합과 튀르키예의 정치인들 간의 더러운 담합이라는 비판하기도 하고 있다.

이민의 한 형태인 해외이주노동자도 범위, 기간, 합법 여부 등이 다양하여 모호한 사례가 많아서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기간도 계절적 혹은 장기적, 국가승인, 교육비자와 연수비자에 의한 제한적 혹은 미승인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McCormic 2023, 317~322쪽). 2019년 ILO에 의하면, 해외이민은 2억 7200만명이며, 그중 해외노동자는 1억 69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중 남성 9900만명, 여성 7000만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노동자가 발생하는 다음과 같이 4가지

4) 예를들어, 2023년 12월20일 유럽연합 이사회와 의회는 난민 심사와 회원국별 난민 배분 방법을 정한 '이민·난민 협약'을 제정하여, 이민과 난민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회원국 각자가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난민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우회하였다는 반론이 높다. 또한 유럽연합은 연합내의 이주와 난민을 받지 않기 위하여 막대한 보조금을 터키 에르도안 정권에 지불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유럽과 터키내 난민의 인권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요인이 있다. 노동자를 고향이나 모국에서 떠나도록 하는 유출요인(Push factors), 저임금 노동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 유인하는 유입요인(Pull factors), 이를 소개하고 촉진하는 매개요인(Mediating factors)이 있다. 그 외에 외부의 정치, 경제제재, 코로나팬데믹, 그리고 종교적 충돌과 같은 외부요인(external factors)이 있다.

유출요인: 전세계 30억 노동자 중 10억명 넘는 노동자들이 생활유지를 위한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지구촌의 현실이 이주노동의 주요 유출요인이 되고 있다(유인영). 이주노동자는 글로벌, 국가, 지방, 가정 경제와 사회유지 차원에서 막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노동력 수출은 빈곤지역의 실업문제를 억제하고, 송금, 기술 교환, 그리고 자본을 축적한 이주자에 의한 고향 투자에 의한 출신지역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김윤식 2009, 33) 송금으로 인하여 외환보유액을 증가시켜, 산업건설을 위한 초보적 자본 형성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증대하고, 사회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통하여 개혁개방을 하기 위한 정보와 인적, 기술 네트워크 확장과 새로운 혁신이라는 선순환 경제구조의 초석이 되고 있다. 물론 발달된 국가에서는 저숙련 노동자이지만, 빈곤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이 있고 젊고 도전적인 나름 숙련노동자 유출이라는 어두운 면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유입요인: 부유한 지역과 국가에서 저출산과 인구유출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어 사회 기본인프라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례가 상당하다. 이에 따라 빈곤 지역 출신 이주노동자에 의하여 이런 위기 지역의 기본 사회 인프라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는 국가소멸이나 지역소멸을 억제하고 사회의 다원성을 유지시키는데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의 노동관련 법규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는 대개 외국인 신분으로 대부분이 저숙련 특정 육체노동 분야의 단순 직무·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재택·원격근무가 불가능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George J. Borjas, Hugh Cassidy, May 2020). 또한 본국 노동자에 비하여, 외국인노동자는 저임금 육체노동을 공헌하면서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유한 국가의 정부와 고용주 입장에서 부차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ILO 2019). 또한 경제호황으로 노동력이 부족할 때는, 수입국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관대하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나 대공황과 같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업이 급증하고 해외이주노동자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할 때는 불법이주노동자를 먼저 추방하는 등 다양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약 3분의 2는 필수 업종(보건의료, 농업, 교통 등)에서 이민자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영국, 독일, 북유럽 국가들은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청소, 농업 등)는 이민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송지원 2024).

부유한 지역으로 이주한 해외노동자들은 그나마 다양한 보호방안을 강구되고 있지만, 자국 출신과 비교하여 여전히 인권침해와 같은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다. 대다수 국가의 노동법은 내국인의 고용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밖에 놓이는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취약한 입장에 있다. 더불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갈등이 발생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노동자 중에서 이주노동자는 인신매매, 강제노동, 집회의 자유, 공정임금과 임금체불, 파견기관이나 고용주에 의한 착취, 차별과 괴롭힘 등에 최취약 계층이다.

매개요인: 난민과 이주, 이주노동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최초부터 정착단계까지 다양한 중개기관이나 업체, 혹은 종교단체와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일부 빈곤한 국가의 경우 인력송출을 위하여 국가의 다양한 기관이 노동자 송출에 개입하여 다양한 이익을 합법적 혹은 뇌물의 형태로 편취하고 있다. 외부 노동 정보에 대한 소개, 여권과 비자 취득이나 이주방법, 취업처와 숙소 알선 등에 대한 합법·비합법적으로 다양한 매개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외부요인: 전쟁과 전후복구, 코로나팬데믹, 종교갈등, 대공황과 산업재편과 같은 정세변화에 따른 외부적 혹은 국면적 요인이 있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유럽인들이 대규모 면화와 담배 농사 등 식민지 개척과 침략을 위하여,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자 아프리카에서 약 천만명을 납치하여 노예노동을 시킨 사례가 해당된다.

자국내의 해외이주노동에 있어, 역사적이며 현재에도 다수의 선진국가들조차 차별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가간 관계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선진국들은 인권을 외교수단의 일환으로 불량국가를 압박하기도 하고, 반대로 공격받는 국가는 자국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눈을 감으면서 다른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서방의 선택적 정의(Selective justice)에 기초한 강압수단이라는 반격을 하고 있다. 대항해 시대의 납치와 노예노동이 있었고, 현대에도 인신매매와 인권유린, 취업사기, 임금편취와 같은 다양한 범죄와 차별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2008년 국제 이주기구(IOM)에 의하면, 매년 최고 100만명이 인신매매되어 강제노동과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전지구적 연합(A Global Alliance against Forced Work)”에서 “노동 또는 경제적 목적으로 매매되는 피해자의 56%는 여성이나 여아”라고 한다(김윤식 2009, 3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일부는 공권력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만, 이와 반대로 더욱 노동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나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나 혹은 더욱 열악한 거주지역에 머물러야 하므로, 단속 역시 적지 않는 딜레마를 낳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복잡하고 모순된 글로벌 이주노동자와 비교하여, 북한 해외파견노동자는 더욱 복잡하고 더욱 취약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애리아, 윤애림(2020)과 문희영(2023)은 이주노동문제에 있어서 강제노동과 제재라는 접근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이주노동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바탕위에 북한의 해외파견의 강제노동과 인권문제를 국제적, 국내적 수준의 노동법과 규약을 검토하여, 북한 해외파견노동자를 피해자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서 북한주민들이 해외노동을 뇌물을 주면서 선호하는 유출요인과 파견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 개념과 특징

지구촌 차원에서도 해외이주노동자가 개념, 범위와 특성은 모호하다. 합법·비합법 및 상주하는·일시적·계절적과 같은 체류 자격, 이주 기간도 연단위, 월단위, 주단위 등 다양하며, 노동이 가능한 비자의 범주도 지역·국가별로 다양하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인권 수준이 높은 서구 대부분 국가의 노동시장에서조차 이주노동자, 특히 비합법적 이주노동자의 차별과 인권침해, 강제노동이 문제가 존재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취약하게 되었다. 또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규모에 대한 추정이 매우 상이할 수가 있다.

이와 비교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와 코로나팬데믹 이후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개념, 방식 및 범위가 더욱 모호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첫째, 해외송금 관련하여 세컨더리 보이콧에 의하여 추정이 어렵다. 이들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대체로 임가공 육체노동을 거주지역에 제공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하여, 서방금융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송금을 하고 있다.

둘째, 노무비자의 취득 유무이다.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 2397호 이후 북한에서 해외로의 노동자 파견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어서, 유엔회원국 내에서 노동비자를 취득한 북한노동자가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 해외파견노동자는 공식적 혹은 노무비자 취득 여부로 범주화할 수가 없다. 현지에서 체류자격과 비자 관계없이 실제 현지에서 노동을 주로 하는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난제가 있다. 또한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경우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 2397호 이전에도 북중-북러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서 노무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해외에서 합법적-비법적으로 노동을 하는 사례가 상당했다. 심지어 국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및 도강증과 친척방문, 관광비자, 산업연수생 등의 체류자격으로도 노동이 묵인되었다. 북한당국과 주민이 미 재무부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금융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전세계 대다수 금융권과 거래가 불가능한 북한 주민들은, 북한으로 금융 혹은 인편 송금을 하는 경우이든 아니든,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국적을 명확히 취득하여 이탈주민의 범주에 들지 않는, 즉 북한국적을 명확하게 이탈하지 않는 노동자를 폭넓게 포함할 필요가 있다.⁵⁾

셋째, 개발도상국 정부권력은 이주노동자 선발에 간섭하여, 합법적 혹은 뇌물의 형태로 이윤을 편취하기도 한다⁶⁾. 북한 정부의 다양한 권력기관이 선발과정, 여권발급, 비자취득, 출신성분 검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개입하고 있다. 해외파견이라는 용어는 정부개입에 주목하는 개념이 되는데, 북한 사례의 경우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와 해외이주 노동자가 대체로 일치하는 개념이 되고 있다.

넷째, 김정은 집권 이후 해외파견노동자는 중국에 가장 많이 파견되었다. 그 다음은 러시아이며, 대만의 원양어선, 동남아와 아랍 등에 파견된 인력이다.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주요도시의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 중심으로 선발되었고, 대다수는 노무비자 이외의 산업연수 비자 등 다양한 체류형태를 보이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주로 도강증이나 친척방문으로 방문을 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 이후 대다수 유엔회원국 내에서 북한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무비자가 중단되었다.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북한의 해외파견노동자에 대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과 범위가 혼재되어, 통계추정기관이나 연구자별로 노동자 규모와 범주가 어느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외화벌이 일꾼과 혼용하여

5) 이들이 은행거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미 재무부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제재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북한 당국과 노동자들의 대책으로 따라서 이들의 규모와 송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더욱 난해한 작업이 되고 있다.

6) 김원(2022) 등을 참조할 것.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에 해외파견노동자의 사례로는 1963년부터 1980년까지 정부 부처인 한국노동청과 정부출연기관 해외개발공사 주도로,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의 파견이 있다. 상당량의 언론보도와 증언, 회고록에 지적된 바와 같이 의하면, 이는 한독 정부간 차관거래의 이면거래의 일부였다. 독일 광산측은 3년이상 숙련노동자를 요구했지만, 노동 경험이 전무한 당시 한국 기준으로 고학력자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정부관계자에 의해 설립된 유령회사에서 뇌물을 주고 경력증명을 발급받았다. 또한 선발 초기 100: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담당공무원에 뇌물을 주는 사례도 발생했다. 따라서 파견 초기 노동경험이 없는 이들을 파견하여 독일 광산에서 많은 사상자와 자살 등이 발생하였다. 독일 파견 간호사들도 역시 험한 의료환경과 고강도 노동으로 유사한 사건이 상당량 보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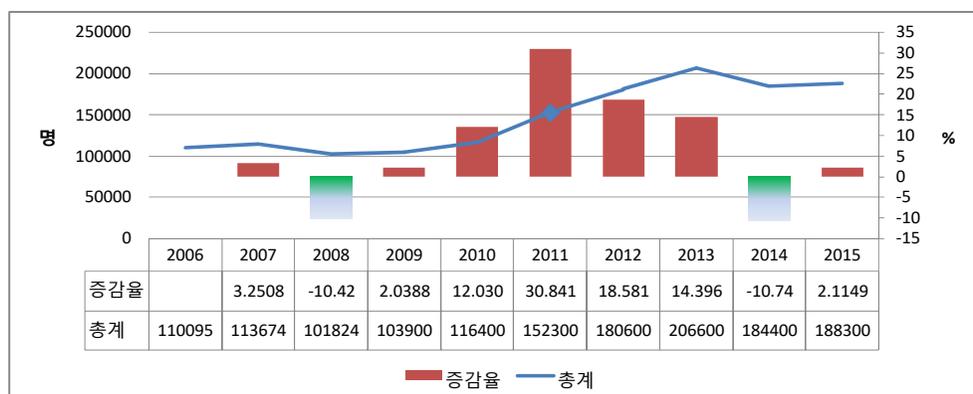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범주에는 무역상, 관광업, 서비스업 등 국가부문의 경영인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에서 일꾼은 간부 혹은 경영이나 관리직을 의미함으로써, 외화벌이 일꾼(간부)과 해외파견노동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권 논쟁이 존재한다.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노동자는 파견국내에서조차 북한에서 파견된 정부 관리인에 의하여 상당한 기본권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주노동자중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파견대상국 시민과 결혼을 하여, 국적을 유지하면서 본국의 가족과 연계하여 파견대상국으로 가족과 친인척 초청 및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주노동자가 결혼이민자와 사례가 혼재된 경우가 많지만, 북한에서 국제결혼은 당국의 특별허가가 필요하고, 북한국적주민이 중국인 혹은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현지에서 거주하며 현지에서 노동을 지속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3. 5.24조치 이후 해외파견노동자의 증가

국제기구와 서방측 보고서에 의하면, 김정일 정권 말기 북한당국은 40여 개가 넘는 국가에 노동자를 파견했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노동을 하거나 이들 지역을 경유하여 출입국을 했기 때문에, 북한과 두 국가의 출입국과 경유인원을 파악하여, 해외노동자 규모를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관련 추정으로는 서론에서 소개한 선행연구인데, 주로 러시아측 통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후 북한에서 해외파견노동자가 급증한 시기는 김정은 집권 초기이다. 이상의 인적교류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다음과 같은 중국의 여유국 통계가 있다(그림1).

〈그림 1〉 중국 입국 북한 여행객 (중복)



자료: <http://www.cnta.gov.cn>(검색일: 2018.05.01.)에 의해 필자 작성

김정은 집권 초기 중국으로 북한주민의 입국 인원이 대폭증가하였다. 이후 2013년 2월 제3차 북핵실험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중국의 북한주민의 출입국이 북핵실험과 이에 따른 중국측의 통제와 같은 외부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국에 입국한 북한 여행객 수는 2011년 들어 전년 대비 약 30% 증가, 1년 사이 약 4만 명정도 증가했다. 2013년에는 20만 명을 초과했으며 2015년에도 약간 감소했으나 이후 약 19만 명 전후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상기 통계는 단순하게 증복된 집계이며, 입국인원으로 대다수가 기존 인원의 교체인원으로, 해외 잔류인원이나 해외파견노동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10년 5.24조치이후 북한 해외파견노동자가 증가하자, 국제사회도 이에 주목하였다. 2013년 한국외교부는 40여개국에 북한 해외파견노동자 4만 6천여명⁷⁾, 2016년 미국 국무부 연례 국가별인권보고서에서 북한 해외노동자를 5만~8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측의 통계를 이용하여, 이상신 외(2017, 4쪽과 13쪽)에서 2013~2016년 해외파견노동자의 전체 규모를 113,300명에서 147,600명, 그중 2016년 중국에 6만 ~7만명 정도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종석(2016, 8~10)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2016년 단동, 연길, 훈춘, 도문에 위치한 주요 공단지역의 북한 해외파견노동자를 4만명으로 조사하고 있다.

당시 필자도 현지를 방문하여, 여러 소규모 기업에서 북한 노동자를 목격할 수 있었다. 관계자 인터뷰 조사한 바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가장 많은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으며, 2017년 연말 러시아만 해도 4만 명 인원이 체류하고 있다는 설명을 청취할 수 있었다.

2016년 1월 6일 김정은 정권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이에 대응조치로 박근혜 정부는 2월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선언하였다. 2016~2017년 유엔 안보리 역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하였다. 남북 교역이 대폭 감소하였지만, 대북 무역 감소 및 노동자 변화에 대한 유의미한 변화는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다. 개성 지역 자체가 남북관계에서 특수한 지역이므로 북한당국이 보안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해외파견을 금지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따라서 5.24조치와 달리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외부요인으로, 중국으로 해외파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 2397호에 따라서 유엔 회원국 내에 추가 노동자 파견이 금지되고, 2019년 연말까지 북한노동자 전원이 귀국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7) 연합뉴스. 2013/10/13. 한국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 현황' 자료에서 2013년 1월 기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중국으로 추가 입국은 없었지만, 실제로는 북중관계와 다양한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1/4~1/5으로 추정되는 일부 인원만이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외부요인은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히 분석하도록 한다. 그러나 2018~2019년 북중관계가 회복되면서, 비정치 분야에서 다양한 북중 인적 교류가 확대되었고, 산업연수생 초빙사업이 진행되었다.⁸⁾

필자는 2020년 연초 중국과 해외의 노동자들이 북중 국경의 주요 출입국 경로인 단둥, 훈춘, 도문, 연길 등에 집결하여 귀국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중국측 세관업무가 상당히 느린 속도로 귀국하지 못하다고 다시 숙소로 되돌아가는 인원이 상당수 발생하였다.

4. 코로나팬데믹 이후 잔류 노동자의 규모 추정

2020년 1월 중국 무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북한 당국은 설날 연휴에 국경 업무를 중단한 이후, 북한 당국은 자발적·선제적으로 방역·보건을 명분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이후 중국 역시 국경을 폐쇄하였다.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하여, 단둥, 훈춘, 도문 등에서 귀국을 준비하던 북한 해외파견노동자들이 귀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북한 당국의 갑작스러운 국경폐쇄를 두고 코로나 예방을 위한 선제조치였다는 보도가 많았다. 그러나 당시 필자의 인터뷰 조사에 관계자는 방역조치만이 아니라 북한당국은 해외파견노동자의 귀국을 지연하여 외화획을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⁹⁾ 중국 당국은 인도주의적 명목으로 비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해외파견노동자의 일시 체류를 허가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등을 인도주의적 편의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북중 부분 국경개방 이후, 북한 해외파견노동자가 과연 귀국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련 연구자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23년 봄 북한과 중국은 국경을 일부 개방하고, 부분적으로 무역과 인적 교류를 재개하였다. 그러나 2024년 8월 현재까지 해외파견노동자들 대다수의 귀국은 미루어지고 있다. 필자와 인터뷰한 대다수 관계자들은 중국체류 북한국적인원이 10만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일부 관계자는 15만명 이상이 잔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8) 2019년 8월, 베이징 관계자 인터뷰.

9) 2020년 1월 단둥, 도문 등 주요 통상구를 방문했는데, 주변에 북한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일부 귀국하는 인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20년 설날 국경을 갑작스럽게 봉쇄된 이후 2024년 7월현재까지 귀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외 수백명 규모의 학생과 연구자, 수백명 단위의 정부관계자, 무역업체와 가족이 1만명 이하이고, 그 외 10만명 이상이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노동에 생계를 의존하고 북한가족에 송금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범위에 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¹⁰⁾

국경에 체류하는 북한 국적 추정¹¹⁾

	2016년 이종석 조사 공단의 노동자에 한정	2023년 필자 조사 전체
단동	30,000	90,000
도문	4,000(고용계약 20,000)	9,000
연길	312(신청 1,380)	8,000
훈춘	3,000	9,000

10) 2023년 8월 관계자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10년마다 끝자리가 0이 되는 해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에 700만명이 일시에 동원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일가구일자녀 정책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호적이 없는 사람(黑孩子)과 각급 학교와 단체에 등록이 된 적이 없는 사람 등 다양한 이유로 통계에 누락된 인구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런데 2020~2022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백신 접종과정에서 인공지능(AI)과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인원통제와 검문을 엄격히 시행하면서,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집중에 성공하며, 중국인구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체류 북한 인원이 15만명을 초과하며, 9만명이 단동 지역에, 4만명정도가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거주지가 불일정했던 북한국적 3만명정도 거주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 외 필자가 인터뷰한 중국전문가들은 8만 5천명에서 15만명까지 다양하게 중국내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규모를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 국제결혼은 국적문제와 결부되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북한당국에 의하여 북한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 국제결혼 허가는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허되었다고 한다.

11) 이종석(2016, 8~10)에 의하면, 단둥시 상주 북한 인력은 2016년 8월 현재 3만 명(무역상·노동자 포함) 정도다. 엔지는 첨단기술개발구의 12개 기업에서 북한 IT 기술인력 1,380명을 신청했는데 2015년 1월 200명을, 2016년 1월 현재 312명을 채용했다. 훈춘시는 2016년 3월 25일 3,000명 정도를 채용했다. 두먼시는 조선투자합영위원회와 북한 노동자 2만 명 고용계약을 맺고, 두먼시에 북한 노동자를 유치할 조선공업원을 건설했다. 조선공업원은 2015년 6월에 북한 노동자를 2,680명 유치했고, 2016년 8월에 약 4,000명을 유치했다. 2017년 필자의 관계자 인터뷰에 의하면, 단둥내 노무비자에 의한 노동자가 27,000명이고, 실제 북한노동자는 4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Ⅲ. 해외파견노동자 파견 규모를 둘러싼 외부요인

1. 주요 요인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주요 발생요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출요인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생존욕구인데 북한 주민 역시 삶의 질을 개선하자고 하고자 생존과 경제적 목적, 그리고 북한당국의 비무역분야에서 외화현금을 수입을 획득하려는 목적이다. 2016년 이후 제재로 인하여 북한의 무역이 제한되면서, 관광, 노동자 등 비무역분야를 통한 경화획득이 더욱 절실한 상황을 맞고 있다. 둘째, 유입요인으로 중국 동북과 러시아 극동 지방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이윤창출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 중앙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국 기준의 인도주의 및 미국정부를 견제하고 김정은 정권을 후견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의 미개발 저소득 변방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이 복잡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2024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중 하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양측의 경제무역 확대 방안이었는데, 푸틴 대통령은 대북제재 결의는 개정되어야 한다며 북한 입장을 적극 지지했고, 서방방식이 아닌 무역 결제망을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비무역 분야인 러시아 극동에 북한 노동자가 진출하고, 서방의 외환거래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중국 위안화를 통한 직접 송금도 가능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셋째, 매개요인으로 모집업체인 중계기업의 이윤추구가 있고, 이에 더하여 북한의 경우 여권, 비자, 다양한 관공서의 각종 수수료 명목의 뇌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부패한 개발도상국들의 고질적인 병폐이기도 하다. 제한적인 개별 인터뷰에 의하면, 중국에서 지불하는 노동자 임금도 노동자, 노동자의 북한내 파견 기관·기업소, 정부부문에 각각 35%, 45%, 20%의 비중으로 분배되고 있다고 한다.¹²⁾ 북중 사이에 해외파견노동자를 둘러싼 유출-유입-매개 요인이 5.24조치, 제재,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전후에도 큰 변화가

12) 코로나팬데믹 기간, 중국 기업마다 임금편차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3000위안 이하로 지불되는 상황이다. 체류 추정인원과 임금을 단순 합산하면 대략 5억달러 수준이고, 정부부문에 분배하는 비율을 20%정도라면 하면 약 1억달러정도가 배분되었다. 분배비율은 각각의 계약조건이나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필자의 인터뷰 조사와 상반되게, 북한인원위원회 카라토이우 등(2022)에 의하면, 90%정도를 북한 당국이 차지한다고 인터뷰 조사하고 있다.

없다는 점에서, 이 장에서는 외부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2. 한국 단독제재조치의 풍선효과: 남한 내륙기업에서 북중국경의 임가공공장 으로

김정은 초기 해외파견 노동자가 급증했는데,¹³⁾ 이는 유출요인이나 유입요인 혹은 매개요인으로 설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북한당국이 노동자의 해외송출에 깊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유출요인으로 당국의 정책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필자는 면담을 통하여 흥미로운 주장을 외부요인을 청취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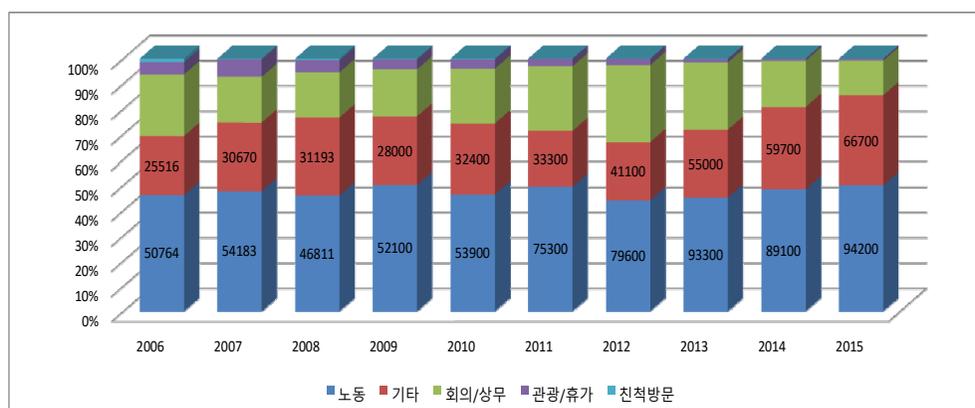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이후 한국의 내륙기업이 철수하면서, 당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영세 기업들은 숙련된 북한 노동력에 관심을 기울였다. 김정은 정권의 정책,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북한 주민의 생존 욕구이라는 요인 이외에, 북중 국경 지방과 러시아 연해주의 지방정부와 소규모 기업, 농장의 인력난이 유입요인이 되었다. 북중러 대삼각 지역을 둘러싼 중국 정부 차원에서 동북진흥계획과 창지투(長吉豆)개발계획 및 러시아 연해주 개발계획과 같은 국가급 개발계획도 영향을 미쳤다. 일자리를 잃은 북한노동자들이라는 유출요인과 더불어 중국정부의 동북진흥계획과 더불어 중국 동북의 노동력 부족이라는 유입요인과 결합이 된 것이다(정은이, 박종철 2014). 당시 후진타오-시진핑 체제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위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북중 무역 및 국경지역의 무역 관련 다리, 세관, 창고, 도로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고, 이와 더불어 노동자도 받아들였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낙후한 북중 국경 지방의 봉제업과 수산물 가공업에서는 노동력 감소와 인건비 급상승으로 저임금인력으로 숙련된 북한노동자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이승철, 이용희, 김부현 2019, 438~457; 이종운, 케빈그레이 2020, 373~394).

2006~2015년 해외파견노동자 상황을 국가국 통계의 항목별 분류에 기초해 검토해 보도록 한다(그림2). 전체 중국 방문자 중 노동을 목적으로 온 북한인은 50% 전후다. 그 외 회의·상무와 관광·휴가, 그리고 친척 방문이 있었는데, 이 그래프상에 중복 수치일 가능성은 있지만 이들중 상당수는 잔류하여 노동에 종사하였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13) 예를 들어, 종전에 북한당국은 건설노동자는 쿠웨이트에만, 벌목공은 러시아에만, 식당종업원이라면 중국에만 파견했다. 그러나 최근 건설노동자는 러시아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 등에도 IT를 비롯한 봉제·수산업·완구·식품·전기전자·별목·건설·군수 등 다양한 부문까지 파견시키고 있다.

이주노동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의 국가여유국 통계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노무비자로 출입한 인원이 2006년 5만명에서 2011년 7만 5천명을 넘었고, 2015년에는 9만 4천명을 넘었다. 또한 체류자격 기타에 해당하는 인원이 2006년 2만 5천명에서 2011년 3만 3천명을 넘었고, 2015년에는 6만 6천명을 넘었다. 당시 노무비자의 경우 1회 중국당국에서 2~3년정도의 체류자격을 인정했고, 일부 인원은 1회정도 비자 연장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2010년대 중반 중국내 북한해외파견노동자가 15만명을 상회했다는 중국 관계자들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림 3〉 항목별 중국 입국 북한 여행객 수(중복)



자료: <http://www.cnta.gov.cn>(검색일: 2018.05.01.)에 의해 필자 작성

기타 체류자격은 일종의 회색지대로 노무비자가 아니면서 도강증과 같은 부분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자격에 해당한다. 필자의 관계자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5.24조치 이후, 변경의 지역 당국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일단 도강증으로 단동이나 훈춘, 도문 등으로 입국했다가, 이후 중국당국은 1년 노무비자로 전환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즉 북한당국과 인력공급 업체, 노동력이 부족한 북중국경의 중국지방과 중국기업, 북한 노동자라는 3자의 이해가 일치한 것이다. 물론 기타나 도강증의 경우 상당수가 반복적인 인원이므로 감안할 필요는 있다.

5.24조치이후 중국내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가 증가된 원인은 외부요인으로 이명박 정부의 단독제재, 유입요인으로 중국 중앙정부의 생존권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 개념, 중국 지방 당국과 지방기업의 정치경제적 이익이 결합되었고, 유출요인으로 북한당국의 경제적 이익 추구하고 북한 인민의 삶에 대한 욕구로 해석할 수 있다.

3. 유엔 안보리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포괄적 제재

후진타오-시진핑 정권이 김정은 집권 초기 체제안정을 위하여 관계악화 국면에서도 경제협력을 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였다. 이 제재에는 일반 주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다양한 조치, 해외노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3~2017년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긴장된 상태로 관계가 악화되었다. 2017년 11월 북한은 미국 수도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화성 15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며 핵무력완성을 선언하였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결의 2397호(UNSC)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역사상 최강의 포괄적 제재(comprehensive sanctions)로써 북한주민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이다. 이 결의는 북한 해외파견노동자를 고용하는 유엔 회원국들이 24개월 이내에 이들 전원을 북한으로 귀국시키기로 결의한 것이다. 즉 2017년 12월부터 북한은 추가로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할 수가 없게 되었고, 2019년말까지 북한이 파견하는 노동자를 유엔 회원국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핵무력완성을 선언한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서방을 향한 대화를 재개하였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되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freezing)조치와 북미 대화의 지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북중-북러 관계를 개선하였다. 중러는 각각 노동자를 추가로 받지 않았지만, 노동자를 제외한 인적교류가 증가하였다. 2017~2019년 중국정부는 관광, 보건, 농업, 지역, 여성, 미디어, 스포츠문화, 청년 등 8대분야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며, 지방의 다양한 기관에서 3~6개월 단기 연수형태로 북한 주민을 받아들였다.¹⁴⁾ 더불어 중국의 개별관광객의 방북도 대폭 증가하였다. 당시 필자가 실시한 관계자 인터뷰에 의하면, 중국내 북한 사람들이 노동자와 다른 형태로 상당수가 입국하였는데, 일시적으로 이는 노동비자를 취득한 해외파견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친척방문, 학생이나 연수생 신분으

14) 2019년 9월, 인터뷰(베이징, 단둥). 중국공산당의 북중교류 8대 분야의 교류는 비군사적 분야이며,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대량 현금의 거래없이도 교류가 가능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의 전분야에 걸쳐 삶의 질의 개선이 가능하며 중국식 개혁개방이 선전이 가능하고, 북한 내부에 외부의 정보유통이 가능한 분야로 기획되었다. 예를 들어 지방 농업기술연구기관간의 교류는 단순한 산업연수를 넘어서 북중사이에 멘토-멘티를 관계를 형성하여, 장기적으로 2020년 이후에도 상호 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로 노동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을 동결하는 동시에 대화를 통한 핵포기를 추진하기 위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추동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와 충돌하지 않고도 북한 당국의 경제협력 요구에 부응하여 비무역 수단으로 경화(currency)를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한 것이다. 2019년말 현지에서 필자는 관계자들로부터 북한 국적자가 최소 15만명을 초과하고 있다는 증언을 청취할 수 있었다. 더불어 같은 시기 중국내 북한 개별관광이 유행하면서 북한을 단기 여행하는 중국관광객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이들중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완화에 대비하여 투자타당성을 검토하려는 상인이나 기업인들의 사전 답사도 섞여 있었다.¹⁵⁾

2017년 안보리 제재는 중국 국경지대의 북한 해외파견노동자를 감소시키는 외부효과로 작동하였지만, 북한노동자가 전원 귀국하지는 않았다. 이후 중국 당국의 관련 통계의 공개가 더욱 소극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필자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북한 여종업을 고용하는 단동의 압록강 주변의 20여곳 북한식당의 경우 2018~2019년 대부분을 유엔 안보리나 중국 중앙정부의 단속을 우려하여 대부분을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쇄되었다. 그러나 북경, 단동, 연길 등 일반 식당에서조차 가슴에 김일성 휘장을 하지 않는 북한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였고, 교외의 소규모 임가공 공장이나 농장으로 북한노동자들이 재배치되었다. 북한 해외파견노동자가 감소했다기 보다는 외국인이 노출이 되고 중국 중앙정부가 감시하기 쉬운 도시 중심의 공장과 식당에서, 외부인의 관찰이 어려운 교외와 내륙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¹⁶⁾ 탈북 외교관 출신 김동수(2023, 6)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제재와 중국 중앙정부의 감시에 대응하여 일종의 풍선효과 현상이 발생하여, 중국내 파견인원이 동북에서 내륙으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쌍트베르부르크 등 서쪽 지역으로 파견근로자들의 파견지가 확대되었다. 중국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지방정부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도강증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기업 차원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중국 중앙정부의 책임대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려는 정책과 북중 지방의 교류와 지방 경제를 위한 지방 정부의 대책은 교류와 단속의 회색지대라는 절충의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2020년 1월 국경 폐쇄까지 북한 해외파견노동자가

15) 2018~2019년 필자는 몇 차례의 주요 통상구와 세관 방문에서 북중 사이에 많은 인원과 물자가 왕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더불어 북한 주민들이 호텔, 식당 등에서 한국인에게 먼저 인사를 하면, 남북-북중 교류 상황을 청취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었다.

16) 2010년대 단동시 중심부 인구가 약 80만명, 광역 단동시 주변 구역까지 합하면 인구가 240만 명 정도이고, 면적은 15km²으로 한국은 1/8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국경지대에서 급격한 감소를 하지 않은 것이다. 2016년 15만명 상회 추정치에서, 2020년 1월까지 상당수의 인원이 그대로 중국 국경지대에 잔류하게 된 것이다. 필자의 관계자 인터뷰 조사에 의하면, 2024년 5월 잔류 인원이 12만명 정도라고 조사되고 있는데, 결의안 이후 대략 1/4~1/5 정도가 중국 체류인원이 감소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특정 개인과 집단에 부과하는 표적 제재와 북한 주민의 무차별 다수에 부과하는 포괄적 제재로 나누어 지고 있다. 중국잔류 북한노동자에 대하여 중국의 입장을 분석해보면,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북한 노동자에 대한 포괄적 제재에 동의했지만, 동시에 중국내에서 2009년 제 1차 핵실험 이후 부과된 유엔 제재가 과연 북핵을 저지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천에 있어서,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 그리고 북한 당국을 모두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절충주의적 혹은 회색지대의 해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IV.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잔류 노동자를 둘러싼 중국의 절충적 해법

1. 북한 당국의 자발적 국경봉쇄와 중국식 인도주의

2020년 1월 설연휴, 코로나 팬데믹으로 북한당국은 ‘국가비상방역체계 전환’을 선포했다. 이렇게 자발적 국경을 봉쇄한 시점에 북한 국적 사람들도 중국에 체류를 연장하게 되었다. 코로나 기간 중국당국은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국경봉쇄조치로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적으로 체류와 노동을 유예하였다. 중국학자들에 의하면, 유엔 안보리의 노동자 귀국 결정에 따라서 현재 노무비자가 아닌 산업연수 등 형태의 결의안을 우회하는 해법으로 결의안과 충돌을 해소하였다. 만약 코로나 팬데믹으로 귀국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내 노동을 금지했다면,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산업연수행태의 체류자격 연장으로 북한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인력부족으로 위기인 지방의 소규모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제공되었다고 한다.¹⁷⁾ 이들 잔류인원의 체류자격

17) 2023년 7월, 베이징에서 전문가 면담.

은 공식 노무비자는 아니지만 관광비자, 친척비자, 산업연수생, 연구원 등 다양한데, 중국당국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노동을 허가하였다고 한다.¹⁸⁾

외부요인으로 중요한 정치적 요인으로 남북과 북미관계가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체제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2021년 1월 바이든 정권과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북미-남북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2018년 이후 김정은의 새로운 길이 북미 평화협상에 기반한 핵이 없는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했다. 그러나 한미일의 연합군사훈련과 대북 강경노선, 그리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러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김정은의 새로운 선택은 냉전을 부추기며, 한미일 전략적 협력에 대응하여 북중러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길로 전환되었고, 핵과 경제발전의 병진노선으로 회귀되었다.

북한의 공식무역량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대폭 축소되어,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추정에 의하면, 2023년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은 98.3%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수출이 2억 9천만 달러, 수입 24억 3천만 달러로 적은 무역량이며, 무역적자는 21억 4천만 달러 수준이다.¹⁹⁾ 중국으로 파견한 해외파견노동자의 임금을 단순합산한 추정치 총액이 5억~6억 달러로, 이는 공식대외 수출액의 약 2배 정도가 된다.

2. 북한노동자들은 언제 귀국할 것인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2023년 1월 해외 입국자들의 시설 격리를 폐지하고, 3년만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료하며, 출입국 제한조치를 완화하며 사실상 국경을 개방하였다. 북한 당국이 자발적으로 국경을 봉쇄한지 3년 7개월째인 2023년 8월부터 육상 국경을 부분 개방하며, 필수 인원 교류 및 무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제로 코로나 선언과 국경개방에도 그들은 잔류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단둥, 연길, 도문, 훈춘, 남평

18) 2023년 6월과 11월, 필자는 중국내 관련 전문가들과 중국 잔류 북한국적자의 규모를 둘러싼 추정치를 청취했다. 북한국적은 약 8만 5천명~15만명 전후이고, 대다수가 노동자의 범주에 속하며 이중 80%정도 복장과 수산물 임가공에 종사하는 여성이다. 이중에는 동남아 등에서 귀국을 위하여 중국을 경유하기 위하여 일시 체류한 노동자와 외교관 수백명도 포함되어 있다.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처: <https://bit.ly/3AGP2dX> (검색일: 2024. 07. 20.); 중국해관통계. 출처: <http://english.customs.gov.cn> (검색일: 2024. 07. 20.).

등의 공단을 중심으로 체류하고, 그 외 도시의 다양한 식당과 외곽의 임가공 공장 및 농촌지역의 소규모 공장과 농장에도 고용되어 있다.

2023년 상반기부터 몇 차례 북한당국이 일반 북한노동자들에게도 국경개방을 한다는 소문이 일부 노동자들 사이에 유포되면서, 농촌의 농장과 임가공업체에서 일하는 일부 인원들이 귀국준비의 일환으로 단동의 대형 도매점에서 모아두었던 돈으로 많은 물품을 구입하고, 단동 시내로 이동하여 체류하기도 하였다.²⁰⁾ 20대 젊은 여성이 대다수로 접하는 이들 노동자들은 중국에 체류한지 4~6년을 경과하게 되었다. 오랜 해외노동에 지친 이들은 좋은 삶과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단동과 연길보다는 시급하게 북한 내에서 가족상봉을 희망하고, 또한 북한내에서 결혼 적령기가 넘음에 따라서 결혼을 위하여 귀국을 희망한다고 하였다.²¹⁾ 그러나 국경 부분 개방이후 2024년 7월 현재까지 질병 치료 등 인도주의적 목적을 제외하고 귀국한 노동자들은 제한적이다.²²⁾

코로나 종식이후 북한해외파견노동자가 언제 귀국할수 있느냐와 교대인원의 재파견문제가 양국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다. 북중관계가 최상의 상태인데도,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않는 원인으로 중국 학자들은 무리한 노동자 재파견과 관련된 북한당국의 요구를 들고 있다. 이는 안보리 제재와 관련되어 있는데, 중국은 전쟁중인 러시아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책임대국으로 자신들이 결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20) 2023년 9월, 중국 요녕성에서 중국기업인 인터뷰.

21) 2023년 9월, 중국 연변, 북한여성 노동자 인터뷰. 코로나 기간 한적한 곳에 위치한 농장과 공장 등 폐쇄된 공간에서 중국인과 접촉없이 생활한 노동자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이 되었고, 접촉한 중국인들은 현지 고용 중국인들로 같은 일을 하였다. 제재로 인하여 이를 조사하는 단체들의 감시 때문에 낮에 실내공간에 주로 머물러야 하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대체로 안전하였다. 그러나 식당 종업원과 같이 외부접촉이 많았던 식당 종업원들은 반복되는 격리와 이동이 있었다. 북한 여성이 결혼 적령이 20대 중반이고, 출산이 20대 후반에 이루어진다는 인구구조의 특성상 중국체류 북한여성노동자들은 결혼을 포기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연변 조선족 출신이 한국과 중국 대도시에 노동을 하면서 원활한 통신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에 의하여 가족이 해체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북중 사이에 노동자는 가족들과 물리적 격리만이 아니라 통신이 두절되어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2) 2023년 7월 중국 요녕성에서 관계자 인터뷰. 국경개방이후 2023년 7월까지 북한으로 귀국인원은 중국내에서 학부,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마친 유학비자와 교환교수 합산 대략 300여명, 외교관 등 정부필수인력, 질병 등 인도주의적 조치, 범죄인 등 귀국인원은 수백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코로나 기간 학위를 취득한 국비 유학생과 연구기간이 도과한 교환교수는 중국의 각종 학술단체와 대학 등에서 연구원자격으로 고용하여, 생활비를 보조했다고 한다. 2024년 8월, 단동의 관계자 인터뷰에 의하면, 북한주민들이 귀국하기 위하여 단동의 대형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고, 중국측 상대방들과 송별회를 하기도 했다. 또한 신규 교체인력이 신의주에서 단동으로 들어오기도 하였다.

준수하여 미국과의 마찰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북한정권의 핵배치의 동결을 유지시키기 위한 해법과 잔류 인원을 인도주의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단 북한노동자가 귀국을 한 이후, 대체 인원이 중국에 입국하게 되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유로 미국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2014년 6월 평양에서 거행된 북러 정상회담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 체결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상당히 상실되어, 중국 당국으로서 대응방안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을 보면, 4~5년이상 중국에 체류한 12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북한에 동시에 귀국할 경우 자유주의 풍조와 정보가 유입의 문제, 즉 이들을 모두 통제할 만한 사회감시체제가 작동될수있는지에 대하여 우려도 하고 있다고 한다. 반대로 삶의 개선을 위하여 북한 내에서 해외로 파견을 준비한 대기 인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고 한다. 중국의 잔류 보호라는 인도주의에도 불구하고, 4~5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혼세대에도 상당한 가족파괴가 있고, 미혼 여성의 연애와 결혼 문제, 북한내 신규 해외파견 요구가 실시되지 않는 등 또다른 인도주의적 문제를 낳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안보리에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결의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 2022년부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제재 및 비난 관련 결의에 대체로 반대(veto)하고 있다. 2024년 3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연장을 거부하며, 4월 20일 이 위원회가 해체되며 해외파견 노동자에 관한 제재도 상당부분 와해되었다. 2023년 9월과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재차 비판하기도 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전배치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현재 상태에서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결의는 북핵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연수생 체류의 북한주민을 전원귀국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제재를 한다면 북한과 국제사회의 단절시키게 되어, 북핵에 대한 어떠한 통제수단도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자율성이 높아진 북한당국은 더 이상의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조차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민생과 인도주의에 대하여 서방과 중국·러시아는 상이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필자는 이를 둘러싼 중국연구자들과 토론을 하면서, 흥미로운 주장을 청취할 수 있었다. 비록 중국정부의 전략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제한적 면담이기는 하지만, 요약하도록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정부에 대한 배려만이 아니라 실제로 달성가능한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점진적 인권 개선방안을 고민하는데, 서방은 자국내의 이주노동자에게도 달성하기 쉽지 않는 이상적인 노동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풀리지 않는 매듭을 더욱 엉키게 하고 있다. 북핵, 그리고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와 해외 노동자의 임금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 노동자의 즉시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방의 전략적 목표인 노동자 전원 즉시 귀국이 과연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인지 혹은 북한을 악마화하기 위한 선택적 정의에 불과한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먹는 것도 인간의 기본권이며 인권의 하나로 간주하고, 북한에서 노동하는 것보다 노동자 개인이 해외 노동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는 물자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노동자 개인과 가족의 민생에 도움이 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정상회담 이후, 반미연대가 확장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북중러 전략적 협력이 강화되는 국면에서 더 이상 노동자 재파견 같은 지역적인 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충돌을 우려하지 않는다. 2023년 6월 시진핑주석과 블링컨 국무장관의 회동 이후 미중 데탕트가 형성되어 있다. 2025년 상반기 미국 신정부의 정책이 구상되기 전까지, 미국 역시 북한 노동자 재파견을 둘러싸고, 미중이 국내정치관리를 위하여 외교적 언쟁은 하겠지만, 더 이상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²³⁾

V. 결론

과거에도 현재에도 글로벌 차원에서 해외이주노동문제에는 불법과 합법의 애매한 경계 대상인 경우가 상당하고, 대다수 선진국에서조차 차별은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며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인 북한 해외파견노동자는 더욱 복잡하고 취약한 입장에 놓여있다.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이 노동을 하게 되는 유출요인과 유입요인은 다른 국가와 같은 요인에 의하며, 이는 비교적 이해하는 쉬운 쟁점이다.

해외파견노동자에 대한 개념, 범위, 규모가 다양하게 정의되는 원인은 주로 외부요인에 의한 것인데, 주로 5.24조치와 유엔 안보리의 제재, 코로나 팬데믹, 미-중러의 전략경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제재의 역설이 작동하며, 풍선효과로서 5.24조치 이후 해외파견노동자가 증가도 했고, 또한 회색지대의 고용형태로 해외의 북한노동자를 파악하기 어렵게

23) 2024년 4월 베이징, 관계자 인터뷰.

되어, 인권측면에서 보호가 더욱 어렵게 된 측면도 있다.

2010년대 중반 최대 15만명 정도가 중국에서 노동활동을 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10만명 이상이 잔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유엔 안보리의 회원국내의 북한노동자 전원귀국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국내에 상당수가 잔류하고 있다. 중국체류 노동자 총수와 임금을 단순합산하면, 대략 5억~6억 달러 수준이며, 이는 2023년 북한 총수출액의 약 2배로 추정된다. 북중 부분 국경개방 이후, 노동자 잔류의 주요 원인은 북한 당국의 경제적 동기에서 기인한다고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내 체류가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중국측은 중국정부는 북한주민에게 다양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며 안보리를 결의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는 북중관계의 특수성에 기초한 국제전략과 더불어 중국식 인도주의적 조치를 절충한 형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체류허가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 역시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데, 4~5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와 가족간의 격리로 인하여 또다른 차원의 인도주의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들의 잔류와 귀국, 그리고 대체인력의 재파견 문제가 북중 사이에 현안 쟁점이 되고 있다. 중국당국은 다음과 같은 절충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상호충돌되는 다양한 쟁점들 사이에서 최대한 충돌을 회피하여 현상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노동자 잔류문제이다. 북중관계가 역사상 최상의 상태이지만,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않는 원인 중 하나로 북한 당국의 노동자 재파견 요구가 있다. 그러나 이는 안보리 결의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은 전쟁중이며 미국과 직접 충돌하는 러시아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중국정부는 책임대국으로 자국이 결정한 북한주민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포괄적 제재를 준수하여 미국과의 마찰을 회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당국이 노동자 전원귀국조치와 같은 추가제재를 한다면 북한과 관계가 악화되어, 북핵을 통제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핵 실전배치를 방지하고, 현재의 핵동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고려사항으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회색지대에 문제를 그대로 놓아두며 이해당사자 어느 일방에 기울어지는 해결방안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 김동수. 2023. 북한대외무역 및 외화벌이 실태. <https://www.ritsumei.ac.jp>. (검색일: 2024. 07. 01.).
- 김원. 2022.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현실문화.
- 김윤식. 2009. 국제 이주, 이민 노동정책에 대한 연구: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연구* 3(1), 31-5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24/7/21. 2023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 램코 브뢰커, 임겨 판 할딩엔. 2016. 유럽연합 내 북한 해외 강제노동. 통일연구원.
- 문희영. 2023. 국외 파견 북한 노동자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지원. 2024. 난민과 이민에 장벽 쌓는 유럽. *경향신문*. 출처: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1022010005> (검색일: 2024. 07. 01.).
- 안제노, 이상근. 2023, 11.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INSS 전략보고.
- 유인영. 10대 글로벌 주요 인권 리스크 분석: 공정임금과 채용. 출처: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79> (검색일: 2024. 07. 16.).
- 윤애림. 2020. 이주노동의 맥락에서 본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문제. *민주법학* 73, 191-219.
-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2017. 북한 해외 노동자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 이우태 외. 2023.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 이에리아, 이창호. 2015. 연해주지역 북한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통일연구원.
- 이에리아 외.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통일연구원.
- 이지연.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 :인권 이주 젠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https://library.fes.de/pdf-files/bueros/seoul/19947.pdf> (검색일: 2023. 04. 08.).
- 이승철, 이용희, 김부현. 2019. 중국 대북 접경지역의 북한 노동력 진입유형과 요인.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2(4), 438-457.
- 이종석. 2016. 국경에서 본 북-중 경제교류와 북한경제 실상. *정책브리핑*(2016-21).
- 이종운, 케빈그레이. 2020. 북한 의류생산 네트워크와 UN 제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4), 373-394.
- 이종운. 2017. 중국경제의 변화와 대북 노동력 활용의 특성. *국가전략* 23(3), 95-124.
- 임순희, 성민주, 이승엽. 2023. 북한이탈주민 사회경제통합실태. 북한인권정보센터.

- 정은이, 박종철. 2014. 중국의 대북한 무역에 관한 연구: 무역 관행과 행태 및 행위자의 변화추세에 따른 역동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6(2), 293-341.
- 조영기. 2016. 김정은 통치자금과 북한 외화벌이 실상. 월간북한.
- 최영윤. 2017.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 통계데이터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 홍제환. 2017.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 Borjas, George J. Hugh Cassidy. May 2020. The adverse effect of the covid-19 labor market shock on immigrant employment. NBER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Chung, Christine, Imke van Gardingen, Kim Kwang-cheol, Oh Kyuwook, Anoma van der Veer, Marte Boonen, Klara Boonstra and Remco Breuker (P.I.). July 2016. How the supply of aaptive DPRK workforce fits our demand for cheap labour: Findings from the slaves to the system Project-6. Leiden Asia Center.
- McCormic, John 저, 김계동, 김동성, 김현경 역. 2023. 글로벌연구: 이슈와 쟁점. 명인문화사.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9. ILO Global Estimates on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Results and Methodology.
- Scarlatoiu, Greg, Raymond Ha and Hyunseung Lee. 2022. North Korean Workers Officially Dispatched to China & Russia Human Rights Denial, Chain of Command & Control. Executive Director, HRNK.
- U.S. Department of State. 2016.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6 Human Rights Report. 출처: <https://www.state.gov/j/drl/rls/hrrpt/2016/eap/265344.htm> (검색일: 2024. 07. 08.).
- 연합뉴스. 2013/10/13. 외화벌이차 해외파견 北근로자 4만6천여명 추정.
- 중국국가여유국 통계 [Http://www.cnta.gov.cn](http://www.cnta.gov.cn)
- 중국해관통계 <http://english.customs.gov.cn>

● 투고일: 2024.07.25. ● 심사일: 2024.07.26. ● 게재확정일: 2024.08.11.

| Abstract |

A Study on North Korean Overseas Dispatched Workers in China

Park Jongcho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n a global scale, overseas migrant workers are subject to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North Korean overseas dispatched workers are in an even more complicated position. Push and Pull factors of North Korean residents working overseas are similar to those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a particularly noteworthy factor is that the paradox of sanctions is occurring as an unintended effect of sanctions. For example, due to the May 24th Measures, a balloon effect occurred, and it is estimated that up to 150,000 people worked in the 2010s. After the COVID-19 pandemic,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100,000 people are still working. From the Chinese authorities' perspective, this can be evaluated as a compromise solution of Chinese-style humanitarianism along with a foreign strategy based on the special nature of North Korea-China relations. However, long-term overseas stays and family isolation are creating another dimension of humanitarian problems. If we simply add up their total wages in 2023, it is estimated to be about twice North Korea's total exports.

〈Key words〉 May 24 Measur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 Corona Pandemic, Overseas Remittance, Comprehensive Sanctions